

##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
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부정 수급건에 대하여 지원 중단 및 기지원금에 대한 환수 처분을 하고자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8일

포천시



- 예정된 처분의 제목: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및 기지원금 환수
-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: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부정수급
-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
가.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  
나. 2022.2.28. ~ 2023.12.31. 지원된 이차보전금 2,722,350원 환수
- 공고기간: 2024. 3. 28. ~ 2024. 4. 11. (15일간)
- 법적근거: 「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조례 시행규칙 제10조,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

대표자	주소	반송사유
오○은	경기도 양주시 옥0서로 130, 000동 0000호(옥정동, 옥정 센트럴파크 푸르지오)	폐문부재

- 유의사항: 공고 기간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 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 본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(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) 처분청(포천시청) 또는 재결청(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)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,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(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)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문의처: 포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(담당자: 박도윤 ☎031-538-2290)